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대상 확대 (안 제5조)

- 지원대상 사업범위에 공동주택 외벽도색, 옥상방수 추가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9.8.8.~2019.8.28.)
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지원과-30515(2019.7.30.)]
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7558]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하여 공동주택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.

○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및 대상에 외벽도색, 옥상방수를 추가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